

전파법시행령중 개정안

전파법시행령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. 다음은 그 전문이며 다만 지면관계상 “체신부장관”을 “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표기되는 부문은 생략했다. < 편집자주 >

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

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제 9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8. “연주소”라 함은 방송사항의 제작·편성·조정
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.

제 3조제 1항제 18호 본문중 “방송위성업무”를 “위성
방송업무”로, 동호가목 및 나목중 “방송위성업무를
행하는 우주국으로 부터의 발사를 수신하는 것”을
각각 “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우주국으로 부터 발사
된 전파를 수신하는 것”으로 하고, 동항에 제18호의
2 및 제19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의2. 위성운용업무 위성의 운용, 특히 위성의 위
치를 추적하거나 위성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
한 무선통신업무

19의2. 위성아마추어업무 위성을 이용하여 행하는
제19호의 아마추어업무

제 4조제 1항제 3호중 “방송업무”를 “방송업무 또는
위성방송업무”로 하고, 동항제30호중 “아마추어업
무”를 “아마추어업무 또는 위성아마추어업무”로 한
다.

제 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8조의3(우주국 등) 우주국 또는 우주국과 통신을
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무선
국이 일으키는 혼신등에 관하여 관련국가와의 조정
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국 허가의 신청전에 정보통
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
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하여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0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

을 허가함에 있어 위성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
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파수의 합리적 배분등 기술
적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 15조제 2항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
아마추어국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용 위성을
설치한 자일 것.

제 21조제 1항중 “(선박국 및 항공기국을 제외한 이동
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)”를 “(휴대용 무선설
비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)”로 하고,
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우주국 또는 지구국에서 종별 2이상의 무선국의
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

제 21조제 5항중 “팩시밀리방송등의 종별마다. 또한 희
망하는 주파수 마다”를 “팩시밀리방송등(이하 “표
준방송등”이라 한다)의 종별에 따라 주파수별로”로
하고,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하나의 주파수로 다수의 방송을 하고자 하는
경우에는 각각의 표준방송등에 대하여 허가신청을
하여야 한다.

제 22조제 4호중 “신원증명서”를 “주민등록표등본”으
로 하며 동항제6호중 “(방송국에 한한다)”를 “(방
송국에 한한다. 다만, 연소소를 갖추지 아니한 방송
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와트미만인 방송국
을 제외한다)”로 하고, 동항제7호중 “외국인등록표
등본”을 “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
인등록등본”으로 한다.

제 23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국(연소소를 갖추지 아니
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전력이 100와트미만인
방송국을 제외한다)에 관하여 법 제4조·법 제6

조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·법 제16조제1항 후단 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24조제 1 항중 “방송구역은 특별시·도·시·군”을 “방송국별 방송구역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지정방법과 작성요령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 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제1호중 “신원증명서”를 “주민등록표등본”으로 한다.

1.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
2. 법 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은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간이무선국

제 33조중 “법 제12조 단서”를 “법 제12조제1항 단서”로 한다.

제 38조제 1 항제 3 호중 “정관등본”을 “정관사본”으로 한다.

제 51 조 표의 전파통신기사 2급란의 종사범위란의 제3호바목중 “무선항해국”을 “무선항행국”으로 하고, 동표의 특수급무선통신사(무선전화 병)란의 종사범위란 및 특수무선기사(레이다 을)란의 종사범위란중 “체신부장관”을 각각 “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하며, 동표의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급)란의 종사범위란의 “무선전화”를 “무선설비”로 하고, 동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모오스부호에 의한 통신조작은 제외한다.

제 56조제 1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항해안전용 수신전용 무선설비
2.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전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설비

제 56조의2제 1 호중 “측정한”을 “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”으로 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코드없는 전화기

5.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

6.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송신출력이 10밀리와트이하의 구내무선국용 무선기기

7.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무선설비 이외의 수신전용 무선설비

제 57조제 1 항제 2 호중 “무선측위국” 다음에 “우주국·지구국”을 추가한다.

제 58조제 3 호중 “형식검정”을 “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”으로 한다.

제 71 조 동조제2항제7호중 “임원의 신원증명서를”을 “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,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”로 한다.

제 72조제 1 항제 2 호중 “(“유도식통신설비”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유도식통신설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 98조제 1 항 본문중 “행정준비중”을 “항행준비중”으로 한다.

제 112조 동조제2호중 “매설건물”을 “매설물건”으로 한다.

제 113조제 1 항 동항제3호중 “최소축척”을 “최대축척”으로 한다.

제 114조제 3 항중 “최소축척”을 “최대축척”으로 “시장(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 또는 구청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제 119조의 제5항중 “법 제67조제3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휴지기간(공동이용계수가 적용되는 무선국에 한한다) 및 법 제6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 119조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/4분기의 징수기간중에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연도의 전파사용료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
제 120조제 1항제 1호중 “(방송국 및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)”를 “(주파수공용방식의 간이무선국 이외의 간이무선국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주소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방송국을 제외한다)”로, “개설·폐지·운용휴지신고”를 “개설·운용개시·폐지·운용휴지신고”로 하고, 동항제3호중 “제4항제3호”를 “제5항제4호”로 하며,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

제 120조제 3항중 “간이무선국”을 “간이무선국(주파수공용방식의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)”로 “개설”을 “운용개시”로, “우체국장”을 “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하는 우체국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목 “어업통신”을 “어업통신(제2조제65호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2중 제22호를 삭제하고, 비고란 제16호중 “제22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별표 10 다목중 “960MHZ 이상의 전파의 폭”을 “960MHZ 이상의 주파수대”로 하고, 동표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바. 목적계수

운 용 목 적	계수
1. 육상이동업무(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중 디지털방식 또는 아나로그·디지털 겸용방식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)	0.03
2. 무선행행업무(레이더·트랜스폰더·거리측정기·전파고도계)	0.5
3. 무선측위(표정 및 표지를 포함한다)업무	0.1
4. 고정업무(도서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중 도서통신용에 한한다)	0.1
5. 우주무선통신업무(위성에 설치된 무선설비에 한한다)	0.1
6.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한 업무	1

비고 : 제2호의 무선행행업무의 레이더중 200톤미만의 어선에 설치한 레이더에 대하여는 목적계수를 0.3으로 한다.

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19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확인증명의 대상이 되는 간이무선국을 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부터, 제119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수신전용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의 무선설비중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◇ 전파법시행령 개정이유

위성시대를 맞아 국납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의 운용에 필요한 무선국의 허가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,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골자

- 가. 위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의 업무에 위성의 운용, 특히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위성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등의 업무를 추가함(영 제3조제1항).
- 나. 무선국을 허가함에 있어서 2이상의 무선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무선국으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우주국 및 지구국의 경우에는 2이상의 업무를 함께 행하더라도 하나의 무선국으로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함(영 제21조제2항).
- 다. 수신전용의 무선설비는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었으나 국제협약에 의하여 업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항행안전용 수산전용 무선설비 및 혼신으로부터의 보호가 특히 필요한 우주무선통신업무 또는 전파전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설비는 앞으로는 신고하고 개설하도록 함(영 제56조제1항)
- 라. 전파사용료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시설자가 당해연도 전파사용료 전액을 1/4분기에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일정금액을 감액하도록 함(영 제119조의12조4항).